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76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8.

발 의 자:권칠승·박상혁·김영배

김민석 · 임종성 · 강병원

박홍근 · 임호선 · 고영인

박정 • 고용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,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.

그런데 「도로교통법」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교통 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, 점차 운전자 중 높은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,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·확

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1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).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만 65세 이상의 차량운전자(이하 "고령운전자"라 한다)의 안 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등) ① 국가등은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·정비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) ①	제15조(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	②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	
야 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1의2. 만 65세 이상의 차량운
	전자(이하 "고령운전자"라 한
	다)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
	예방에 관한 사항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고령운전자의 교통안
	전 등) ① 국가등은 도로환경
	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
	<u>확충·정비하는 등 고령운전자</u>
	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책을
	<u>강구하여야 한다.</u>
	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고
	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시책을
	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	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
	<u>을 할 수 있다.</u>